

의안번호	2212816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5.11.0.
추계번호	25E49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한 비과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4조의36(개사육농장주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)	○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신설 －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장주가 같은 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의 폐업으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－ 2024년 8월 7일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104조의36(개사육농장주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「개식용종식법」”이라 함)에 따른 개사육농장주가 같은 법 제11조¹⁾에 따라 폐업으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수 또는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「개식용종식법」은 개식용농장주 등으로 하여금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

1)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(폐업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폐업예정일 등이 포함된 ‘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’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사육농장주의 폐업 촉진을 위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개사육농장의 시설물 잔존 가액(감정평가비 포함)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

-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에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와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, 시설물 잔존 가액은 시·군·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하며, 국비와 지방비를 5:5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폐업 이행 구간별 사육 마릿수당 지원단가

구 분	1구간 ¹⁾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	6구간
기 간	‘24.8.7. ~‘25.2.6.	‘25.2.7. ~‘25.8.6.	‘25.8.7. ~‘25.12.21.	‘25.12.22. ~‘26.5.6.	‘26.5.7. ~‘26.9.21.	‘26.9.22. ~‘27.2.6.
지원단가	60만원	52.5만원	45만원	37.5만원	30만원	22.5만원
지원기간	2년	1년 9개월	1년 6개월	1년 3개월	1년	9개월

주: 1) 법 공포일(2024.2.6.) 이후부터 법 시행일(2024.8.7.) 이전에 폐업한 농가 포함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「개식용 종식 기본계획」, 2024.10.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농장주의 소득금액, 개사육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습득이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체 개사육농장 1,537호(사육두수 기준 468천두)가 폐업계획을 제출했고, 2025년 8월 7일 현재 1,072호(사육두수 기준 346두)가 폐업을 신고했음²⁾
 -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지급분 *추가경정)예산안 편성 지연 등의 문제로 개사육농장주 소속 지방자치단체별 폐업이행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기에 편차가 있으며,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개사육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지원금 지급현황 및 농장주당 평균 지원금 지급액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임

2)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, 「개식용종식호,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」, 2025.8.14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